

예 산 총 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4,100,000	18,723,000
일반회계		567,000,000	17,010,000
특별회계		57,100,000	1,713,000
	기타특별회계	57,100,000	1,713,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40,000	25,2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1,510,000	645,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00	2,1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20,000	111,6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1,800
	치수사업특별회계	380,000	11,4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20,000	174,6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700,000	741,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121,06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